



여성가족부



복권위원회

2021년 5월부터,

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!

첫째,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

- ✓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상
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
생계급여를 받는
저소득 한부모가족

지원내용



- ✓ 자녀 1인당 월 10만원
아동양육비 지원

신청방법



- ✓ '21.4.20. 현재 한부모가족
지원 미신청 가구
→ 읍·면·동사무소 신청 및
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
- ✓ '21.4.20. 현재 한부모가족
증명서 발급 가구
→ 별도 신청 없이 지원

둘째, 만 25세 ~ 34세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

- ✓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상
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
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
저소득 한부모가족
※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
52% 이하인 경우

지원내용



- ✓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
월 10만원 추가지원
- ✓ 만 6세 이상~18세 미만
자녀 1인당
월 5만원 추가지원

신청방법



- ✓ '21.4.20. 현재 한부모가족
지원 미신청 가구
→ 읍·면·동사무소 신청 및
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
- ✓ '21.4.20. 현재 한부모가족
증명서 발급 가구
→ 별도 신청 없이 지원

※ 문의: 읍·면·동 주민센터, 한부모상담전화 (☎1644-6621 ▶ 2)

※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online.bokjiro.go.kr)에서만 가능("정부24"는 신청 불가)